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994호
2. 발 의 자 : 정지웅 의원
3. 발의일자 : 2023. 8. 10.
4. 회부일자 : 2023. 8. 21.

II. 제안이유

- 2022. 1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 청구 사무에 대한 주체가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바뀜
- 이에 따라 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」를 폐지함.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,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전부개정],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95호, 2021. 10. 19., 제정]
2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

- 동 폐지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정지웅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994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폐지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지난 2021년 전부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‘법’)은¹⁾ 그동안 舊법 15조제1항²⁾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사항을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·제정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·개정·폐지에 대한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고,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 기준 역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- 따라서 동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사라져 법적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.

1) 지방자치법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전부개정]

2) 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“19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[표-1] 지방자치법 중 주민조례청구 등에 관한 법령 변화

<p>舊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2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</p> <p>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“19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	<p>現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전부개정]</p> <p>제19조(조례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)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·청구대상·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</p> <hr/> <p>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95호, 2021. 10. 19., 제정]</p> <p>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자)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“청구권자”라 한다)은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 “지방의회”라 한다)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라 한다)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주민조례청구 요건)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<u>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 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· 도: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
---	--

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있습니다.